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2025.4.1.)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별 예산제도 용어체계 도입(안 제19조, 제21조)

나.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도입(안 제47조의2)

1) 유사 검토 완료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

2)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소액 기준 신설

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경영상 중대한 변화 구체화(안 제47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다시 이를 관·항”을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세항간”을 “단위사업간”으로 한다.

제47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사의 사장이 출자에 대해서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 ⑦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란 최대주주의 변경, 당초 출자한 목적사업의 변경,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경 등을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에 관한 적용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관한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u>다시 이를 관·항으로 구분한다.</u>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u>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생략) ② 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u>세항간</u> 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단위사업간--</u> ----- ----- -----.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공사의 사장이 출자에 대해서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제3항부</u>

<u><신 설></u> <u><신 설></u>	<u>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 <u>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u> <u>⑦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란 최대주주의 변경, 당초 출자한 목적사업의 변경,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경 등을 말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962